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사본 1부

제41조의4제3항 중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그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를 “법 제30조의4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을 “제2항”으로, “보호조치”를 “보호조치와 제3항에 따른 완료보고”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공사완료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실내작업의 경우만 해당)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제43조의3의 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대상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를 “법 제30조의6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5의2 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전 평가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확인

별표 5의2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감점	1) 국제표준기구(ISO)획득에 의한 운영관리 2) 행정처분이력
---------	--

별지 제20호의2 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26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첨부 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마. (생략) 바. 감리원 특수건강진단 사본 1부
----------	--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해체·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해체·제거감리구역현황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용역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m³)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m³)			
	기간	석면해체·제거기간		감리기간	
감리원배치현황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여부				
석면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확인자		성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3항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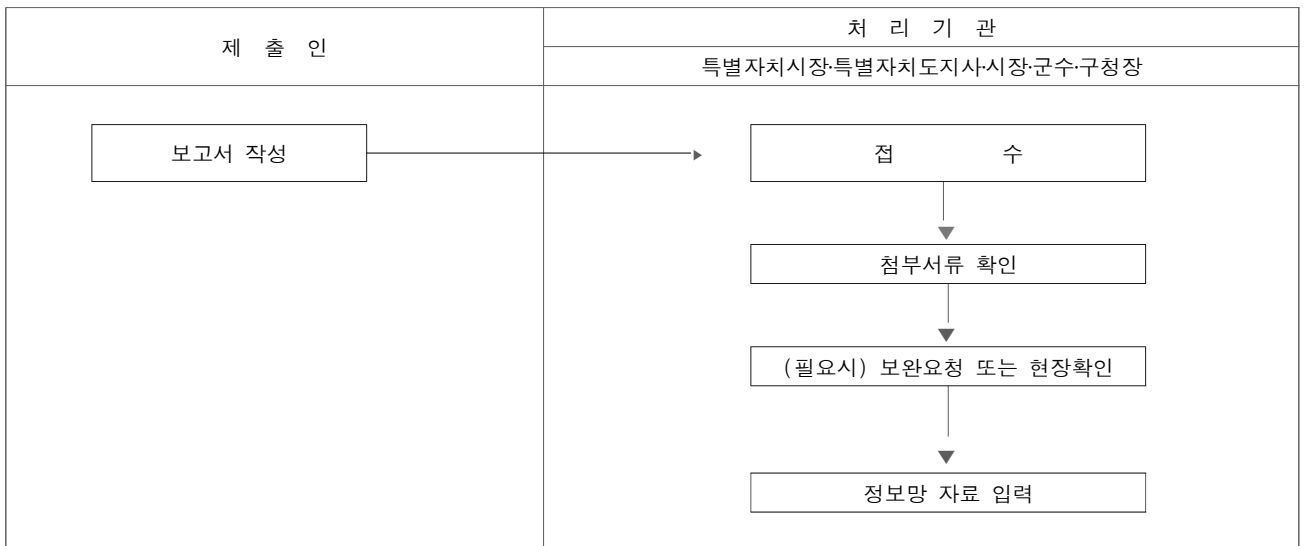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석면 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실내작업의 경우만 해당)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방법

1. “발주자”란은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구역의 원 발주자를 적습니다.
2. “감리인”란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업자를 적습니다.
3. “석면해체·제거업체”란은 석면해체·제거업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주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적습니다.
4. “석면해체·제거감리구역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용역명, 현장주소, 용역개요는 석면해체·제거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 나. 석면해체·제거기간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기간, 감리기간은 석면해체·제거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등급: 배치 감리원을 일반, 고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나.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실제 배치기간 및 일수를 기재

처리 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생략) 1. ~ 6.(생략)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현행과 같음)
<신설>	7. 감리원 특수건강진단 사본 1부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② (생략)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20호의3서식</u> 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 ----- ----- <u>그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u>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 <u>제7호에서</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u>	4. <삭제>

완료보고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공사 완료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결과보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실내작업의 경우만 해당)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④ ----- 제2항-----

보호조치와 제3항에 따른 감리 완료보고-----

-----.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1항제9호 및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